

설명회 제03-1호

# 주요 외감법 위반 사례 (등록요건 관련)

2025. 7. 10.



감사인감리국

## I 개요

- 新「외부감사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이하 “등록감사인”)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19.11.1일 시행)
  - \*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
- (등록요건 자체점검) 등록감사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 \* 「외부감사규정」 제8조제10항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 (감사인감리 점검) 금감원의 감사인 감리 시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준수의무 자체점검 실시여부, 발견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이 개정(‘22.5.3. 시행)되었으며,
  - \* 등록요건 도입 후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취소 외에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제재수단 마련(시행령 §16②, 규정 §14⑨)
- 이와 관련하여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등 처리방안을 증선위에 보고\*
  -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22.10.4.)

## II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주요 내용

### 가.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조치대상 등 판단기준

□ (조치대상 판단기준)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이하 “기본조치”)는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

○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 고려)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은 통상 직전 감리대상기간 이후부터 금번 감리 시작일의 직전 분기말이므로

- 2022년 하반기 감사인 감리(‘22.7월 이후 착수)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확인시 조치

□ (등록심사기준 활용)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여부, 위반정도 등 판단에 등록심사시 적용된 기준\*을 활용

\* 등록심사시 활용한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 등

○ 등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등록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면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

\* 등록심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제도·내규의 실제 운영 등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판단시 고려

### <등록요건 유지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등록 당시 감사인이 구축한 체계\*1 등이 등록 이후 실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2으로 볼 수 있음

\*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

\*2 등록요건 중 “체계를 갖출 것”의 의미는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그 목적(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증빙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등록심사시 점검

◆ 등록심사시 확인되었다면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사항이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유형

□ (조치유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는 ①중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시정권고 + 지정제외접수부과)와 ②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

○ 위반시 조치의 종류, 수준(양정)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선권고와 구분) 품질관리감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권고”는 모두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나 각 조치의 성격, 근거법규·기준, 후속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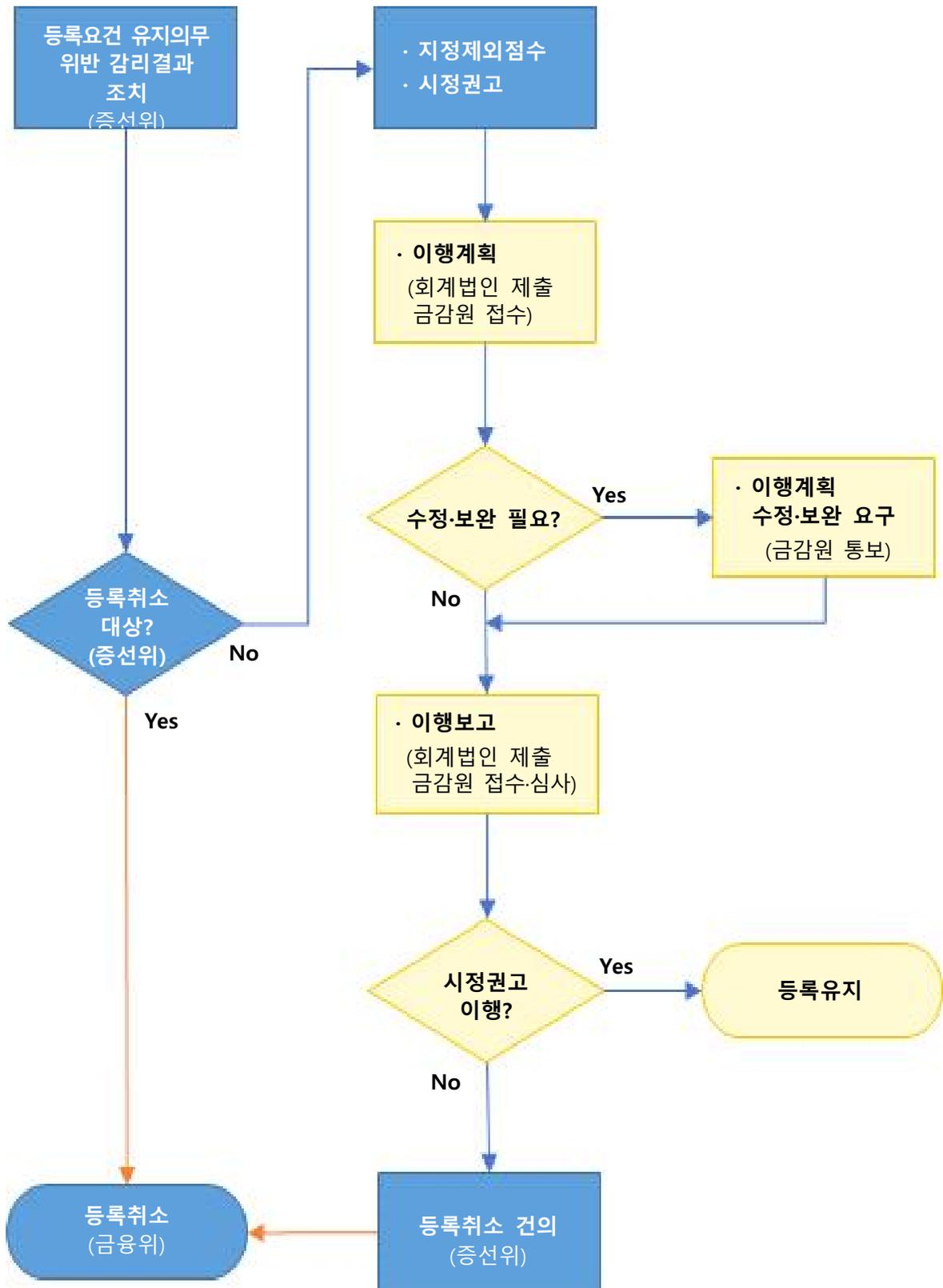
구분	개선권고	시정권고
조치 성격	•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주목적	• 등록취소 조치 전 위반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관련 법규	• 외감법 §17①, §29⑤~⑦ • 외감규정 §36②	• 외감법 §9의2④, ⑤ • 외감규정 §8의2①
이행계획 제출기한	• 3개월(이행 진행상황 제출)	• 1개월
이행기한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 6개월
이행결과보고	• 이행기한 이후 1개월이내	•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미이행시 조치	• 미이행사실을 대외공개 가능	• 등록취소 가능

○ 특정 품질관리체계 관련 미흡사항\*이 품질관리기준 위반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규 등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조치

\* 감사투입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예: 감사투입시간 승인절차 누락 등)

등록요건(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목)	품질관리기준 (한A31-1)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 절차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기본조치(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와 등록취소 건의는 병과 가능하나,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건의는 생략 가능

## 다. 조치양정기준(안)

### 1 일반원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각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치는 ①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 부과)와 ②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성

※ 등록 및 등록취소는 금융위 권한이므로 증선위가 금융위에 취소 건의

#### < 조치양정 기준 일반원칙 >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외감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규정한 각 목의 등록요건별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
- ②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③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병과 가능**
  -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아니할 수 있음**

## 2 위반행위의 중요도

### 가 중요도 구분

-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요도 구분 기준

구분	정의
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b>현저히 미흡</b>한 경우</li> <li>○ 내부통제 등<sup>1)</sup> 또는 조직·물적설비 등<sup>2)</sup>에 <b>심각한 결함</b>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b>매우 부실</b>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경우</li> </ul>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b>미흡</b>한 경우로 ‘중대’ 또는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수준의 위반행위인 경우</li> <li>○ 내부통제 등<sup>1)</sup> 또는 조직·물적설비 등<sup>2)</sup>에 <b>결함</b>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b>부실</b>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li> </ul>
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b>일부 미흡</b>한 경우</li> <li>○ 내부통제 등<sup>1)</sup> 또는 조직·물적설비 등<sup>2)</sup>에 <b>일부 결함</b>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b>일부 부실</b>하나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다음과 같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li> <li>- 감사인 감리시 표본검사(Sampling test)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 미흡사항으로 위반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li> <li>- 동일한 등록요건 중 위반행위가 외부감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선위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li> </ul> </li> </ul>
주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이하 “내부통제 등”이라고 함) 2)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기타설비 등을 의미(이하 “조직·물적설비 등”이라고 함)	

## 나 등록요건별 세부판단기준

□ 중요도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요건별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 1. 인력요건(외감규정 별표1제1호)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① (1-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유지(지방소재 법인은 20인)	▪ 위반기간 <sup>1)</sup> 이 120일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 위반기간 <sup>1)</sup>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관리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90일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 <sup>1)</sup> 이 30일 미만
③ (1-다) 품질관리업무담당자 경력 5년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90일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 <sup>1)</sup> 이 30일 미만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	▪ 위반시간 <sup>1)</sup> 이 90시간 이상	▪ 위반시간 <sup>1)</sup> 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 위반시간 <sup>1)</sup> 이 30시간 미만
⑤ (1-마)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유지해야 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최소 1명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120일 이상	▪ 위반기간 <sup>1)</sup>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 위반기간 <sup>1)</sup>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주1) 위반기간 = $\sum(\text{위반인원} \times \text{위반일수})$ 위반시간 = $\sum(\text{위반인원} \times \text{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 인력요건(①, 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예: 30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외감규정 별표1 제2호)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⑥ (2-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sup>1)</sup> 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⑦ (2-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⑧ (2-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⑨ (2-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⑩ (2-마) 외부감사 투입시간을 신뢰성,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⑪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주1) 체계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제도, 물적설비, 인력, 조직 등을 의미(이하 동일)			

### 3. 심리체계(외감규정 별표1 제3호)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⑫ (3-가)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⑬ (3-나) 심리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⑭ (3-다) 주권상장법인 등 필수 심리대상회사의 감사 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 사전심리를 완료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필수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20% 이상 미 실시 <sup>1)</sup>	▪ 필수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10% 이상 20% 미만 미 실시	▪ 필수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10% 미만 미 실시
⑮ (3-라)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사후 심리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사후 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sup>2)</sup> 미만 실시 <sup>1)</sup>	▪ 사후 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이상 25% 미만 실시	▪ 사후 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25% 이상 30% 미만 실시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b>⑩ (3-마)</b>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저히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미흡</li> </ul>
주 1) 심리수행자, 내용, 절차, 방법 등이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심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심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소수점 이하는 절상			

#### 4.보상체계(외감규정 별표1 제4호)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b>⑬ (4-가)</b>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성과평가지 감사업무 품질평가 지표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나</li> <li>▪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성과평가 보상체계가 현저히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상 60% 미만</li> <li>▪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상 70% 미만</li> <li>▪ 일부 미흡</li> </ul>
<b>⑭ (4-나)</b>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 이상 90%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 이상 100% 미만</li> </ul>

### Ⅲ 등록요건 주요 위반 사례

#### 1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경력기간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외감규정 [별표 1] 1-나.)

□ A회계법인은 X1.1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사임 후, X1.2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하고 X1.3월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동 후임자를 이사로 선임하였는 바, X1.1월~3월 기간 중 적격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두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적격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부재한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중요도를 '보통'으로 판단

#### 참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양정기준

##### 1. 인력요건(외감규정 별표1 제1호)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 위반기간이 90일 이상	■ 위반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이 30일 미만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전업의무 소홀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한다 (외감규정 [별표 1] 1-라.)

\* ①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②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 ③법령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④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⑤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⑥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이행상태 점검, ⑦감사조서 관리, ⑧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 B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X1년부터 경영지원실장으로 부터 지출결의, 인사, 자금 관련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품질관리 외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였음

⇒ 품질관리업무가 외감규정 [별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관여한 업무 건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보통'으로 판단

\* 위반시간 또한 양정기준상 '보통' 구간(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에 해당

### 참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양정기준

#### 1. 인력요건(외감규정 별표1제1호)

등록요건 \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	■ 위반시간이 90시간 이상	■ 위반시간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 위반시간이 30시간 미만

### 3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운영 미흡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외감규정 [별표 1] 1-나.)

□ C회계법인은 품질관리담당자의 평균 연봉 책정시 소속 공인회계사의 기본급여만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품질관리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평균 연봉에 미달함\*

\* 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의 운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로 보아 중요도를 '중대'로 판단하였으나, 최종 '보통'으로 조치

#### 참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양정기준

#### 4.보상체계(외감규정 별표1 제4호)

등록요건	위반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b>⑬ (4-나)</b>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 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 80% 이상 90%미만	■ 90% 이상 100%미만